

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



구 미 시

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시에서는 지역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지역 먹거리사업 발굴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정책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대표자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사장 김장호
- (3) 소재지 :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
- (4) 출연금액 : 6억원

(5) 사업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
(6) 사업내용 : 대형 미래먹거리 사업 발굴 및 기획, 산업정책 분석 등

(7) 출연근거

○ 법 령 : 지방재정법(제18조), 국가균형발전특별법(제3조),
산업기술혁신촉진법(제11조, 제19조), 지방자치단체
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20조)

○ 조 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나. 주요 사업

(1) 미래 신성장 프로젝트 발굴·기획

○ 지역 신규 국책사업 발굴·기획

- 구미시 미래성장동력 신규사업 발굴 및 구미 현안사업 기획

○ 지역 신산업 거점 육성 정책

○ 구미 미래 혁신성장전략 수립

- 미래산업, 스마트 산업단지, 기업지원, 일자리 분야 전략적
육성방안 수립

(2) 산·학·연·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

○ 산업정책협의체 운영 지원

○ 지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

○ 지역 산업경제 관련 국책연구기관 정기교류 등

(3)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네트워크 활성화

○ 경북 및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연계 협업 사업 발굴

-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사업 발굴 지원

(4) 지역 산업경제 동향 분석

○ 대내외 경제·정책·산업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

- 구미 지역경제산업 Brief 작성·제공

- 구미 제조업 실태조사 분석 및 지역기업 공급사슬분석 등

(5) 구미시 연구개발사업 통합 성과관리

다. 출연의 필요성

(1) 구미시 현안 분석, 지역 신성장동력사업 발굴·기획,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등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의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소 운영 지원 필요

(2) 국정과제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수요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Think Tank 구축하여 산학연관 혁신 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식허브기능 강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(2)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
(3)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
(4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(5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비용추계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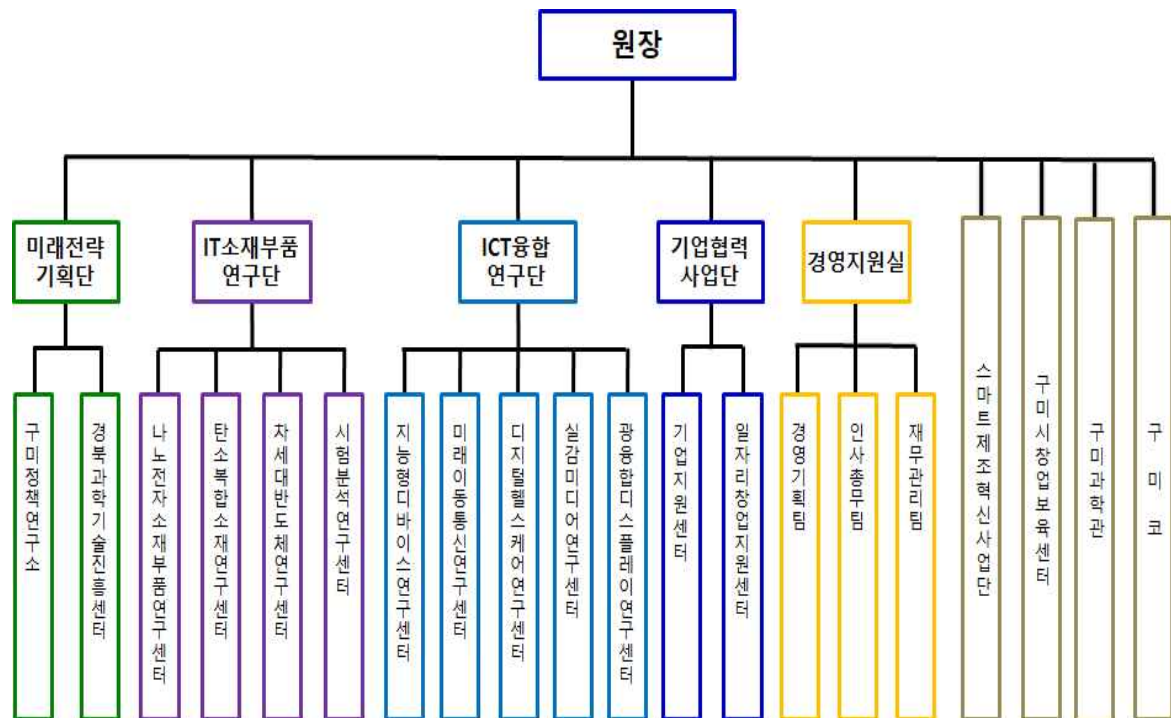
□ [재]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

①기관명(주소)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(주소) 경북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			
②기관소개	○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및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 ○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		
③설립근거	○ 법 률 : 민법 제32조 ○ 규 칙 :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○ 조 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		
④연 혁	○ 설립일자 : 2007. 7. 30. ○ 기관명칭 변경 : 해당없음	⑤관계기관	○ 산업통상자원부
⑥주요기능	○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○ 산·학·연·관 지역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협력거점 구축 ○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○ 지역 전자정보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및 집행 ○ 제품의 규격·성능시험·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사업 등		
⑦기관장 소개	○ 성 명 : 김장호 ○ 학 력 : 경북대학교(경제학) 학사,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석사 ○ 경 력 :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상북도청 기획조정실 실장 現)구미시장		
⑧조 직 기구도	*별첨 참고		
⑨공시책임자	○ (담당자)(소속) 인사총무팀 (직책·성명) 선임 최재완 (전화) 054)479-2016 ○ (확인자)(소속) 인사총무팀 (직책·성명) 팀장 박성원 (전화) 054)479-2012		

[별첨]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조직기구도

□ 기 구 : 4 단, 1 지원실

- 이사장 : 구미시장

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□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

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(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. 이하 "산업기술개발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, 부품·소재 및 장비·설비(플랜트를 포함한다) 기술
2.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
3.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,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
4.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·시스템 기술
5.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·자원기술
6.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
7. 디자인·브랜드·표준 관련 기술, 유통·전자거래 및 마케팅·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
8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
9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
10. 삭제 <2013. 3. 23.>
11.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
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
13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

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(이하 "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

2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(이하 "참여기관"이라 한다)

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기획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약에 관한

사항

2.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(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

2. 산업기술 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

3. 연구장비·시설·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(集積化) 촉진

4.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·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·관리 및 활용의 촉진

5. 산업기술의 표준화, 디자인·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

6.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·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

7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(이하 "주관기관"이라 한다)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

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(제1항은 제외한다)·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관연구기관"은 "주관기관"으로, "산업기술개발사업"은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 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※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

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
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
인정되는 사업

□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제3조 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 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 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 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-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구미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국책사업 유치, 지역산업정책, 지역발전전략, 지역경제동향 등 연구 및 기획 기능을 위한 연구소 운영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『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』에 의거 운영비 산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3,000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시 비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3,000,000
합 계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600,000	3,000,000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신산업정책과 최영진(☎480-615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비목		세목	산출내역	금액
총계				600,000,000
직접비	소계			594,100,000
	인건비	인건비	- 기존인력 7명 * 박사 4명, 석사 1명, 학사 2명 - 신규인력 1명(석·박사급)	499,200,000
	연구활동비	전문가활용비	- 300천 원×30명	9,000,000
		기술정보수집비	- 5,000천 원×1식	5,000,000
		학회·세미나 참가비	- 500천 원×8회	4,000,000
		도서문헌구입비	- 300천 원×10회	3,000,000
		교육훈련비	- 500천 원×8명	4,000,000
		국내여비	- 120천 원×8명×6회	5,760,000
		연구환경유지비	- 400천 원×12회	4,800,000
		비품구입비	- 3,440천 원×1식	3,440,000
		회의비	- 200천 원×10명×3회	6,000,000
	연구수당	연구수당	- 인건비의 10%	49,900,000
간접비	소계			5,900,000
	간접비	간접비	- 직접비의 1%	5,900,000

소관 실 · 과		신산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조 영 열
	담 당	신 주 선
	담 당 자	최 영 진 (480-6152)